

## I. 들어가면서

오늘 기독교 학문연구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기독교학 문연구회 이사장님, 회장님, 임원진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 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고세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하드웨어 공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중에 제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모델법 연구”라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전부터 저희 학교 민법 교수님들과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 단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과제를 공모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했고, 공동연구자로 3년 동안 인공지능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 영국 런던과 캐나다 퀘벡에 열린 인공지능법학회에 참여해서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논의하는 인공지능과 법의 문제를 바라보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책을 함께 준비하며 출간했습니다.

## II. ChatGPT

먼저 ChatGP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ChatGPT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알파고와 바둑 대국에 있어서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의 충격과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알파고보다 더 파장이 더 크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직접 써보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오픈AI재단이 ChatGPT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했습니다. 그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에서도 ChatGPT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픈AI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계로 말미암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AI재단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ChatGPT 기술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에 이러한 ChatGPT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IT 업계에서도 여러 측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IT 업계에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많은 국가에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라는 것을 “구글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검색과 구글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 ChatGPT의 등장으로 적색경보 수준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글도 처음에도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바드(Bard)의 시험 버전을 일부 한정된 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모든 분에게 구글 바드를 쓸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Bing)처럼, 구글에서도 검색 엔진에 구글 바드를 통합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Meta, 예전 페이스북(Facebook))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인터넷 IT 기업 가운데 선두 주자였습니다. 메타는 오픈AI재단, 구글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접근합니다. 메타는 자사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사람은 메타가 제공한 생성형 인공지능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메타가 인터넷에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스코드를 사용을 해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내용 콘텐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치를 옹호하는 내용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의 시체를 경찰에 잡히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는 메타의 생성형 인공지능 오픈코드를 써서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터넷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III. ChatGPT와 법

그러면 ChatGPT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역에 되게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전 같으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이제 기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법원 판사 출신인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교수님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실 분을 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건가요?” 그 교수님은 저에게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 방향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 지도학생들과 상담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아

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변호사라는 전문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다시 질문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인공지능이 변호사 직역에서도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본다면 많은 분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답변을 듣고 교수님은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 세 직업 가운데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은 어떤 직업으로 보시나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분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sup>1)</sup> 사안을 판단하는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지 어떠한 기계나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판사라는 직업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검사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고 형사사건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사도 인공지능에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영역에서는 변호사가 어떠한 영역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기술도 임대차에 관한 사건은 많은 사안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한 사안은 폐쇄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주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현실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傳賃) 제도는 다른 국가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관습법으로 인정되던 제도를 법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제도가 대만의 전권(全權)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의 예를 본다면, 임대료를 한 달이나 두 달, 많은 경우에 석 달 정도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도 매개 가격의 80~90% 정도의 돈을 보증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오늘날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문제되기 이전에도 현실에 있어서 임대차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많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민사소송

---

1) 최근에 대법원도서관에서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한 판사 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재판 업무의 오류를 많이 줄여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보증금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유형이 한정됩니다. 또한 사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써서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 구조의 법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안은 사안 유형이 폐쇄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안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안은 없습니다.<sup>2)</sup> 예를 들어, IBM이 만든 범용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의학용으로 만든 것이 암 진단용 ‘왓슨’(Watson)이고요. 법 분야의 인공지능이 IBM ‘로스’(Ross)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파산할 지를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IBM 로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법 영역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쓸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안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sup>3)</sup>

그런데 인터넷 신문의 많은 댓글은 사람이 판단하는 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판사를 모두 공정한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서 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판사는 아주 제한적·폐쇄적인 영역에서 한정된 데이터 값으로 단순히 기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주차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차 위반 사건입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비 사안입니다. 이런 한정된 사건,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람이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인공지능 판사와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 대학원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는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분들에게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 편견에 기초한 자료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심어져 있기

2) 그런 뜻에서 아주 많은 사실관계 가운데 다른 요소로 말미암아 그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도 많습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차별담당 공익위원으로 노동사안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안의 경우,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틀렸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첩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쓴 가짜 정보, 가짜 이미지와 가짜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sup>4)</sup> 그리고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미디어를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미디어를 쓰는데에 결과는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영양분이 많은 과일을 꺾는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목적으로 칼을 쓸 때에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sup>5)</sup>

#### IV. ChatGPT와 규범의 방향성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본질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sup>6)</sup>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의 관점에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30년전쟁으로 과거의 신앙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돌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전제로 했고,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에 등장했습니다. 법에서는 ‘Reasonable Person’을 종전에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Reasonable Person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평균적인 인간’이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합리적인 인간’을 ‘평균적인 인간’으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이성(理性)을 기초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위치를 인정합니다.<sup>7)</sup>

그런데 현대에서 와서는 ‘근대 사회에서 추구한 인간의 합리성’은 실제에서 허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현대의 행동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

4) ChatGPT를 만든 오픈AI 재단의 CEO가 미국 청문회에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주의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5) 영어 media의 단수형인 medium은 매개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medium은 ‘무당’이라는 뜻도 갖는 단어입니다. 그 미디어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6) 인공지능을 효율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 되어서, 점점 여러 영역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 그런 원리가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또는 ‘계약자유 원칙’(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으로 구입합니다. 그 사람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소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식이나 물건 구매는 우리가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 이후의 합리적인 이성은 사실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26-27).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사람은 온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shalom)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은 육신의 온전함과 정신적인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19). 그 사랑의 기초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감사 고백이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9-10<sup>8)</sup>; 139:13-16<sup>9)</sup>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6-17).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자연 법칙에 대해서 말한다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하셔서 (창세기 1:3), 그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요.<sup>10)</sup>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대한 법이 공동체 규범인 하나님의 법과 견줄 때, 앞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하여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리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의 절반인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sup>11)</sup> 또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격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출애굽기 32:1-20).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출애굽기 34:1-28). 또한 헬라어로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갖는 성경책이 “신명기”(Deuteronomy)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6-21). 큰 흐름으로 본다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법의 준수가

---

8)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22:9-10, 새번역)

9)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온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39:13-16, 새번역)

10)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14-16).

11) ‘십계명’은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으로 나눌 때, 대표적인 도덕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사랑임을 깨닫고, 실질적인 목적의 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17-48).

## V. ChatGPT와 기독교 - 교육, 교회 공동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로스쿨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과 한국이 다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과 우리나라의 시선이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시선의 차이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 영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바라는 그런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네모 상자가 있는데요.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한국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 교육은 그 상자 안에 있는 네모 안의 영역을 배우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모 상자 밖에 있는 자신만의 눈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국 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5년 반 근무를 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sup>12)</sup> 그러면서 주변 교수님들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가신 교수님들이 공통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림 1: 우리 나라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

12) 법학교육을 기존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전국에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했습니다.

갔더니,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상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대’자를 뺀 법학 전문학원이었습니다.” 법학 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 갔을 때 선배 교수님들이 하셨던 그러한 걱정이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sup>13)</sup>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sup>14)</sup> 또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할 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교육의 어려움을 하나로 줄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여러 전문 영역에서 평가하는 많은 시험은 자격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시험입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전국에 있는 25개의 학교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1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 정원의 숫자를 2천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는 정원을 1,500명 정도로 고정시켜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해서, 첫 번째 졸업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순수하게 2천 명 가운데 1,500명의 합격생을 뽑아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숫자가 1,500명으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적 합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누적 합격률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함께 공부하는 친구 가운데 둘 중 한 명만 합격할 수 있는 잔인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과 부모님이나 친지 분들,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지 않는 친구들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한 명은 붙는데, 너는 붙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시험입니다.<sup>15)</sup> 그러다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거의 모든 촉각을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과목에서

13) 제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 성과는 “법이론”과 “법실무”를 통합한 점입니다. 사법시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은 학교에서 법학교육을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 법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면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4) 미국식 제도이고,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도입하지 않은 낯선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을 먼저 논의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일본이 먼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도입했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도입한 뒤에, 제도 보완을 해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15) 현실의 어려움은 기존 사법시험은 1차(선택형 문제), 2차(서술형 문제), 3차(면접시험)를 몇 달 간격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 시험은 1주일 동안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시험에 없던 기록형 시험까지 보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험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인간적인’ 시험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중이 큰 과목은 듣지만,<sup>16)</sup>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수강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필수 과목은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고, 선택과목<sup>17)</sup>은 과목 개설이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교육의 문제는 네모 상자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만을 잘 정리해서 암기해서 시험 답안지에 쓰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되었습니다.<sup>18)</sup>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러한 틀에 익숙해져서 이 네모 상자 바깥에 있는 부분을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대학 입학을 정점으로 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가고자 하는 사회 현상<sup>19)</sup>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노출되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책(텍스트)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sup>20)</sup>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떠한 교과서나 기본서 내용을 읽고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에 너무 노출되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을 정리한 쪽집게 학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처음부터 무언가를 공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는 공부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측면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50% 미만입니다. 누적 합격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해야 할 절대 분량은 많은데 시간을 3년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sup>21)</sup>

제가 장황하게 법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현상이 법학전문대학원

---

16) 예를 들어, 민법, 형법, 헌법과 같은 기본과목이 그러합니다.

17)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세법 같은 법이 그렇고,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도 학생들이 점점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18) 가장 큰 특징은 최신 3년 동안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있는 법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얇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향이 있습니다.

19) 이런 엄두를 내는 학생들은 현행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20) 여러 통계 수치에서 보면, 해마다 사교육비의 지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평가하는 대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언어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1) 일부 선생님은 이러한 점이 현행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문제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법학교육은 시스템을 갖추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 식의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학생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법학교육의 문제는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찾아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헌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을 권위에 두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교황’에게 권위를 두었습니다. 권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의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대체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잘 준비하셔서, 목사님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중심의 성경 공부는 일반 성도 분에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목사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마음에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날마다 QT를 하고, 그 QT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QT를 할 때 성경의 특정 문자에 집중해서 이를 물리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문맥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성도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명망처럼 이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의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성도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sup>22)</sup> 그래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고, 인공지능 기술이 높아지면서 좀 더 그럴 듯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할 때에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인들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매몰되거나 종속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sup>23)</sup> 이로 말미암아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간극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 ChatGPT로 그런 간극이 좁아진다는 인식과는 반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부분에 더 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 해 가을 기독교학문연구회에 다룬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

22)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으려는 경향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3)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변호사분이 ChatGPT가 제시한 판례 사안을 신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안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ChatGPT가 제시한 판례 사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전문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더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비전문가인 일반인 분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해 준 정보를 온전히 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고를 더욱 심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위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보조 순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이렇게 마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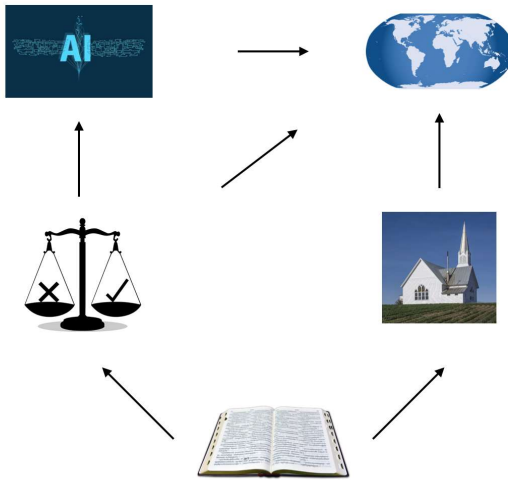


그림 2: 법, ChatGPT, 교회의 방향성

## <참고문헌>

-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2018.
- \_\_\_\_\_,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2020.
- \_\_\_\_\_,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2023, 5-36쪽.
- 김병근 지음, 교회와 법률, 박영사, 2022.
- 김재인 지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동아시아, 2017.
- 김희권 지음, 인문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박영사, 2022.
- 데시데리우스 에라스 무스, 마르틴 루터 지음, 이성덕, 김주한 옮김, 루터와 에라스무스: 자유의지와 구원, 두란노아카데미, 2017.
- 대니얼 카너먼 외 지음, 강주현 옮김, 생각의 해부, 와이즈베리, 2015.
- 데이비드 샅스 지음, 박상현, 이승연 옮김, 아날로그의 반격 - 디지털, 그 바깥의 세계를 발견하다, 어크로스, 2017.
- 래리 스톤 지음, 홍병룡 옮김, 성경 번역의 역사 - 하나님 말씀의 기록과 보존과 전달을 둘러싼 이야기, 포이에마, 2010.
- 레슬리 뉴비긴 지음, 홍병룡 옮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2013.
- 로버스 쇼 지음, 조계광 옮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생명의 말씀사, 2019.
- 리차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지음, 위대선 옮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와이즈베리, 2018.
- 마르틴 루터 지음, 최주훈 옮김,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 복 있는 사람, 2020.
- \_\_\_\_\_, 마르틴 루터 소교리문답-해설, 복 있는 사람, 2018.
- 손봉호 지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_\_\_\_\_,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도서출판CUP, 2017.
- 손봉호 외 15인 지음,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 - 웨슬리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소명, 학문, 그리고 교육 이야기, IVP, 2015.
- 스튜어드 러셀, 피터 노빅 지음, 류광 옮김, 인공지능 - 현대적 접근방식 1, 제이펍, 2016.
- \_\_\_\_\_, 인공지능 - 현대적 접근방식 2, 제이펍, 2016.
- 신국월, 니고데모의 안경, IVP, 2016.
- C. V. 웨지우드 지음, 남경태 옮김, 30년 전쟁, Humanist, 2005.
- 싱클레어 퍼거슨 지음, 정성묵 옮김, 온전한 그리스도 -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디모데, 2019.

- 아서 I. 밀러 지음, 김동환, 최영호 옮김, *아티스트 인 머신 - AI 창의성의 세계*, 2022.
- 아펜셀라 프로젝트 편찬위원회, *아펜셀라 부자의 설교*, 신앙과지성사, 2018.
-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김소영 옮김, *십자가란 무엇인가 -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 구속, 용서, 해방, 치유, IVP, 2016.
- \_\_\_\_\_, 김기철 옮김, *신학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 2015.
- 양현혜 지음, 우치무라 간조, 신 뒤에 숨지 않은 기독교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유진 피터슨 지음, 양혜원 옮김, *이 책을 먹으라 - 영적 독서*, IVP, 2022.
- 이대열 지음, *지능의 탄생*, 바다출판사, 2017.
-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제67권 제2호*, 2018.
- 이병주 지음, *기독교와 법*, 대장간, 2021.
- 이성덕, “양심과 법 사이에서 - 존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운동의 딜레마,”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집*, 2018.
- 임영익 지음, 프레디쿠스, *클라우드나인*, 2019.
- 이중기, 황기연, 황찬근 지음,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박영사, 2020.
- 정요석 지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상, *삶을 읽다*, 새물결플러스, 2021.
- \_\_\_\_\_,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 *삶을 읽다*, 새물결플러스, 2018.
- 제임스 A. 미치너 지음, 윤희기 옮김, *소셜 상, 열린책들*, 2021.
- \_\_\_\_\_, *소셜 상, 열린책들*, 2021.
- 조규창 지음, *비교법(상)*, 소화, 2005.
- \_\_\_\_\_, *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조영우 지음, *평신도가 성경과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북코리아, 2017.
- 존 버니언 지음, 최종훈 옮김, *천로역정*, 포이에마, 2022.
- 존 스토티 지음, 정옥배 옮김,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 복음·종말·교회*, IVP, 2017.
- 존 스토티, 데이비드 에드워즈 지음,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 포이에마, 2010.
- 존 칼빈 지음, 문병호 옮김,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생명의 말씀사*, 2009.
- 크레이그 텃와일러 지음, 황영헌, 황규준 옮김, *iGods 아이갓*, 아바서원, 2014.
-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이진남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8 - 법*, 바오로딸, 2022.
- 툼 라이트 지음, 박규태 옮김, *바울 평전*, 비아토르, 2020.
- 티시 해리스 워런 지음, 백지윤 옮김, *오늘이라는 예배*, IVP, 2019.
- 팀 켈러, 캐시 켈러 지음,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 -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향해하다*, 두란노, 2019.

- 팀 켈러 지음, 오종향 옮김, 센터처치, 두란노, 2019.
- 한국교회탐구센터 편저,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IVP, 2017.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20.
- \_\_\_\_\_,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박영사, 2021.
- 한희원 지음,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 박영사, 2018.
- 현승종, 조규창 지음, 로마법, 법문사, 1996.
- Bruce A. Kimball, *The Inception of Modern Professional Education - C. C. Langell, 1826-1906*,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 Cass R. Sunstein, *Behavioral Law &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Charles Foster and Jonathan Herring, *Identity, Personhood and the Law*, Springer, 2017.
- David A. DeSilv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William B. Eerdmans, 2018.
- David Kinnaman, *Unchristians*, BakerBooks, 2007.
- F. Brown, S. Driver, And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Hendrickson, 1906.
- Fabrice Jotterand and Marcello Ienca, *Artificial Intelligence in Brain and Mental Health: Philosophical, Ethical & Policy Issues*, Springer, 2021.
- Gerhard Lohfink, John P. Galvin (Trans.), *Jesus and Community*, Fortress Press, 1984.
- Gordon John Wenhan and others,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 Zondervan Academic, 2014.
- Henry Sumner Maine, *Ancient Law*,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864.
- Gordon John Wenhan and others,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2, Zondervan Academic, 2015.
- Joel B. Green, *Seized by Truth - Reading the Bible as Scripture*, Abingdon Press, 2007.
- Marinanne Meye Thompson, *John - A Commenta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 From Augustine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Volume II, Abingdon Press, 1987.
-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 From the Protestant Reformation to the Twentieth Century*, Volume III, Abingdon Press, 1987.
- Ryan Calo, A. Micael Froomkin and Ian Kerr, *Robot Law*, Edward Elgar, 2016.
- Richard A. Posner, *Law &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Richard D. Nelson, *Deuteronomy - A Commenta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1, Zondervan, 1990.
- Richard Susskind, Tomorrow's Lawyers – An Introduction to Y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Richard Susskind, The End of Lawyers? – Rethinking the Nature of Legal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Robert Stevens, Law School – Legal Education in America from the 1850s to the 1980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7.
- Ruth Haley Barton, Sacred Rhythms – Arranging Our Lives for Spiritual Transformation, InterVarsity Press, 2006.
- Stephen L. Cook, Reading Deuteronomy –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Smyth & Helwys Publishing, 2015.
- Sungo Lee, Religious and Science in Context of Islam and Korean Christianity, Theology and Science, Volume 20, 2022.
- Tom Allen, Can Computers Make Contract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9, 1996.
- Tomasz Pietrzykowski, Personhood Beyond Humanism – Animals, Chimeras, Autonomous Agents and the Law, Springer, 2018.
- Visa A.J. Kurki and Tomasz Pietrzykowski, Legal Personhood: Animal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nborn, Springer, 2017.
- Walter Bauer and Frederick William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Walter C. Kaiser, Jr., God's Promise Plan and His Gracious Law, JETs 33/3, 1990.
- William S. Morrow, An Introduction to Biblical Law, William B. Eerdmans, 2017.
- Woodrow Barfield and Ugo Pagallo,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ward Elgar, 2018.

### <관련 신문기사>

- Alyson Krueger, 1,001 nights, by ChatGPT, Tech, The New York Times, April 11, 2023.
- Ana Swanson, A.I. helps unlock mysteries of supply chains,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8–9, 2023.

Benjamin Weiser, Here's What Happens When Your Lawyer Uses ChatGPT, New York Region, The New York Times, May 27, 2023.

Cade Metz and Mike Issac, Tech titan Meta cedes its A.I. crown jewels,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20, 2023.

Cade Metz, ChatGPT king isn't worried, but he knows you are,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6, 2023.

Emma Goldberg, I turned over my office inbox to A.I., Tech, The New York Times, May 23, 2023.

Erin Griffith, He's on a mission to show A.I. can improve humanity,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26, 2023.

Ezra Klein, The surprising thing A.I. engineers will tell you if you let them, Opinion, The New York Times, April 20, 2023.

Farhad Manjoo, A.I. photoshopping is about to get terrifyingly easy, Opinion, The New York Times, May 25, 2023.

Farhad Manjoo, Already, ChatGPT is changing how I do my job, Opinion, The New York Times, April 26, 2023.

Hilary Achauer, Your next fitness coach could be a robot, Well, The New York Times, May 12, 2023.

Joe Coscarelli, It's a hit. Is it creative or is it A.I.?,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25, 2023.

Karen Weiser and Cade Metz, When A.I. chatbots 'hallucinate',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9, 2023.

Kevin J. Delaney, Bringing A.I. to the workplace, carefully,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11, 2023.

Nico Grant and Karen Weise, Big tech chooses speed over caution,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11, 2023.

Nico Grant, Google fights to stay ahead of Bing's A.I.,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18, 2023.

Noam Scheiber and John Koblin, Screenwriters and actors identify A.I. threat,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6–7, 2023.

Ross Douthat, For Easter, the strangest story ever told, Opinion, The New York Times, April 8–9, 2023.



Steve Lohr, A.I. a threat to lawyers? We've heard this before, Business, The New York Times, April 11, 2023.

Tiffany Hsu and Steven Lee Myers, A.I. gives rise to an industry to detect what's real, Business, The New York Times, May 22, 2023.

Travis Diehl, In the age of A.I., counteracting nostalgia, Culture, The New York Times, May 10, 2023.